

FAO/WHO 합동식품규격계획 제21차 식품표시부회

김 영 동
(규격관리실)

I. 머리말

식품규격은 각 나라마다 식품규제 특성상 필요에 따라 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식품무역거래상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을 만들어 식품의 국제무역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1961년 FAO총회 및 1962년 WHO이사회의 권고에 의해 1962년에 FAO/WHO합동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가 설립되게 되었다.

상기 위원회는 하부기관으로써 각종 식품마다의 규격을 다루는 제품부회(Commodity Committee)와 식품위생 및 표시 등 식품 전반적 관련사항을 다루는 일반문제규격부회 등이 있는데 식품표시부회(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는 일반문제부회에 속한다.

이에 필자는 1991년 3월11일부터 15일(5일간)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21차 식품표시부회(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21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에 참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II. 세계규모의 Codex규격작성 절차

1. Step 2, 2 및 3

1) 위원회는 작업우선 사항의 설정 및 하부기관

설립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여 세계규모의 Codex규격 작성을 결정하고 이것을 해당 하부기관 또는 다른 관계기관에서 담당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다.

2) 사무국은 규격초안 (proposed draft standard) 작성을 준비한다.

3) 규격초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등 여러가지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규격위원회 가입국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적기관에 송부한다.

2. Step 4

접수처리된 의견은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규격초안의 수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부기관 또는 다른관계기관에 송부한다.

3. Step 5

제안된 규격초안(draft standard)은위원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4. Step 6

규격안이 사무국에서 접수되면 경제적 이해관계 등 여러가지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가입국 및 관계 국제기관에 배포한다.

5. Step 7

접수처리된 의견은 사무국에서 의견의 검토 및 규격안 수정의 권한이 부여된 하부기관 또는 다른 국제기관에 송부한다.

6. Step 8

규격안을 Codex규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수정

에 대한 가맹국에서 접수된 문서상의 제안사항과 함께 사무국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Ⅲ. 식품표시부회 주요토의사항 개요

1. 의제 채택

본 부회의 주요 토의할 의제는 다음표와 같으며 토의진행순서는 다소 변경하였다.

2. 총회 및 다른 규격전문부회와의 관련사항

1) Low-energy 및 Reduced-energy 표시와 Claims에 대한 규격제안중 제36차 실무위원회(paras. 37-38, Alinorm 89/4)에서 결정한 영양평가와 관련된 조언을 준비하는데 특별식이요법 식품영양 Codex부회(CCNFSD)와 공동연구할 것에 동의 하였다.

2) 아시아국가의 식품표시 실시에 대한 검토

아시아지역의 표시가이드라인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Codex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CCASIA)가 지역적 필요성을 제안한 부수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다면 CCFL은 이에 위임할 것에 동의하였다.

3)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과 관련 표시와 기타

문제 검토

현재 유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품의 전생산량이 몇몇 국가에서는 1~2%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국제무역에서 이들 제품의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보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조사식품과 조사식품첨가물에 관한 개정사항 검토

본 부회는 일반식품규격 Section 4·2·1·3의 조사된 배합재료(paras. 15-24 and Appendix III, Alinorm 89/22)를 식품재료혼합에 응용할 수 있음과 일반표시 규격의 Section 5·2·2와 5·2·3,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의 Section 7·2를 변경없이 판매할 경우는 판매를 보류하기로 하였고 Section 5·2·1의 둘째를 “Energy”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Logo의 사용에서 두개의 위치(예 : 제품 이름과 다음에 Logo)로 나타내어 복잡하게 보이는 설명서와 Logo는 생략할 것과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사용된 “Radura”로 알려진 국제적인 Symbol 표시의 사용에 동의 하였다.

FAO/WHO 합동식품규격 계획 제21차 식품표시부회 의제

- 의제 1. 개 회
- 의제 2. 의제 채택
- 의제 3. 총회 및 다른 규격 부회와의 관련사항
- 의제 4. Codex 일반규격중 조사식품에 있어서 포장식품의 표시와 Codex 일반규격중 조사처리 첨가물에 대한 식품첨가물 표시조항의 개정안 검토
- 의제 5. 식품 Claim에 대한 Codex 일반 가이드라인 제정안 검토
- 의제 6. 식품 첨가물에 대한 분류제목의 목록 개정안 검토
- 의제 7. 식품표시 목적에서 영양성분 기준값에 대한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영양성분 허용권고에 대한 FAO/WHO 공동전문가협의회 보고서에서 관련사항 검토
- 의제 8. Codex 규격과 실행 Code에서 표시 조항 승인
- 의제 9. 식품표시에서 “Natural”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안 사항검토
- 의제10. 식품에서 건강과 영양 Claims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안 사항 검토
- 의제11. 영양표시에 대한 Codex 가이드라인의 사용에 대한 분석 방법 진척도 보고
- 의제12. 기타 업무와 향후 추진 사항 협의
- 의제13. 다음 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
- 의제14. 보고서 채택

4. Claims에 관한 Codex 일반가이드라인의 개정안

1) Section 1 : 배경과 일반원칙은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다.

2) Section 2 : 정의

“Qualities”란 용어를 “Characteristics”로 변경할 것과 “Production”이란 용어는 가이드라인의 배경 범위의 식품특성 목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 Section 3 : 금지된 Claims

가이드라인, 규격 및 실행 Code 법률적인 분류에서 “Should”와 “Shall”이란 용어의 함축적인 의미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다.

4) Section 4 : 오해하기 쉬운 Claims

본 Section은 매우 주관적이고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제목의 일부분을 “Potentially”란 용어의 포함과 “잠정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Claims 에”인 Claim 목록의 참고사항에 동의하였다.

5) Section 5 : 조건적 Claims

영양적으로 가치가 있는 필수영양성분의 첨가 허용절차를 분명히 하기위한 Section 5, 1(i)의 Codex일반원칙과 Section 5, 1(III)을 명백히 하기위한 지역 또는 전통적으로 제조된 식품의 예(Halal, Kosher : 유대인의 전통음식)의 삽입 및 Section 5, 1(i)의 영양성분 첨가에 대한 Claim의 허용에 있어 보상시 영양성분의 감소 생략에 관계된 “Section referencing claims”의 첨부에 동의 하였다.

5. 식품첨가물에 대한 제목분류목록의 개정안 검토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Codex 일반규격의 Section 4.2.2.3을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paras. 82-84와 Annex II, Appendix VI, Alinorm 89/12A)Codex 제21차부회에서 마련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제목분류목록의 제안사항(Appendix II, Alinorm 89/22)을 재검토하고 견고제(Firming agents)를 분류제목에 부가와 화합물 범주에서 산류제목에 동의 하였다.

6. 식품표시 목적으로 영양성분 기준 값의 제정안 검토

영양성분 표시의 Codex가이드라인 Section 3.3.4의 수정안 제출과 비타민 A의 계산에 대한 전환인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CCNFSDU의 권고인 주석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7. Codex규격과 실행 Code에서 표시조항 승인

1) 제19차 어류 및 어류제품의 Codex위원회(Alinorm 91/18)

- ① 급속동결 어류필렛에 관한 일반 규격개정안
- ② 건조상어지느러미에 관한 규격안

2) 제15차 가공육 및 가공류 제품의 Codex 위원회

- ① 가공육 및 가공류제품에서 Non-meat protein products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 ② Corned beef에 관한 규격안
- ③ Luncheon meat에 관한 규격안
- ④ Cooked cured ham에 관한 규격안
- ⑤ Cooked cured pork shoulder에 관한 규격안
- ⑥ Cooked cured chopped meat에 관한 규격안.

3) 제7차 곡류, 두류의 Codex 위원회

- ① 쌀에 관한 Codex규격제정안

4) 제22차 우유와 우유제품에 관한 Code원칙의 FAO/WHO합동전문가 위원회

- ① Brine cheeses에 관한 Group standard안
- ② Uncured/Unripened cheeses에 관한 Group standard에 관한 Group standard안
- ③ 식용 Rennet casein에 관한 규격 A-14안
- ④ 식품급의 sweet whey와 산분말에 관한 규격 A-15안

5) 제19차 아프리카의 Codex조정위원회

- ① 식용 Cassava가루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규격안
- ② Couscous에 관한 아프리카 지역 규격 제안안

6) 제7차 곡류, 두류의 Codex위원회

- ① Durum wheat semolina와 Durum wheat flour

7) 제22차 우유 및 우유제품에 관한 Codex원칙의 FAO/WHO합동전문가 위원회

- ① 농축우유, 농축탈지우유, 농축부분적탈지우유 및 농축고지방우유에 관한 규격 A-3개정안
- ② 당첨가 농축우유, 당첨가 농축탈지우유, 당첨가농축부분적 탈지우유 및 당첨가 농축고지방우유

8) 제19차 규격화의 ECE/Codex식료그룹 전문가 회의

- ① 야채주스에 관한 일반규격안
- ② 혼합과일주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 ③ 혼합과일넥타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8. 식품에서 “Natural”용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Natural”이란 용어는 소비자가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라는 의문의 제기와 모든 문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부 예만을 들어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Natural”이란 용어사용에 있어 기계적인 제조 또는 동결만으로 만들어진 단일성분제품에 적용할 것을 주장 하였으며 “Mechanical”이란 용어는 저온살균을 포함하여 “Physical”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등 정부간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승인을 보류하였다.

9. 식품표시의 Health 및 Nutrition Claim의 사용에 관한 Codex 가이드제안안 검토

인간의 건강을 위한 필수영양성분의 역할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식품산업이 아니라 식품을 섭취하는 개개인의 건강관리 책임에 있다는 의견과 Health Claims에서 “Prohibited”를 “Permitted”로 변경하고 질병의 위험감소 또는 질병발생지연의 식이법형태에서 식품의 접합성 Claim을 언급하였으며 만일 물질의 어떤양이 존재한다면 물질에 관계된 “Free”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Less than(특별한 양)”의 Claim을 허용한다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몇몇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후 가이드라인 제안의 개정에 동의 하였다.

10. 영양표시의 Codex가이드라인 사용에 관한 분석방법의 진척사항보고

캐나다 N. Thompson 박사는 W. Horwitz등의 책임하에서 “영양표시에서 요구된 분석방법의 정확한 변수검토를”한 예비시험 제안을 보고함에 따라 실무단은 CCMAS의 승인된 영양표시목적에 관한 sampling과 분석의 Codex방법은 시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보았다.

11. 기타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1) 날짜표시 체계화 2) 식품에서 알레르기 가능성 물질 3) 영양표시의 Codex가이드라인의 Section 3·2·1·4에 관한 정부의견 요청. 4) 향후추진계획

- ① Codex규격에서 표시조항 승인 ② 식품 표시 목적에 관한 영양기준값안의 검토 ③ 식품표시에서 “Natural”용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의 검토 ④ 식품표시에서 건강과 영양 Claims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안안 검토 ⑤ 식품에서 알레르기

성분에 관한 표시의 검토 ⑥ 식품표시의 Codex가이드라인(영양성분 목록) Section 3·2·1·4에 관한 각 정부에서 제출된 정보의 검토.

12. 다음회기(제22차)의 개최 날짜와 장소

의장은 캐나다 정부가 본 부회의 주관을 계속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고 다음회기(제22차)의 임시계획을 1993년 4월말 또는 5월초로 하자는 데 동의 하였으며 향후 상세한 것은 캐나다와 Codex간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것에 동의 하였다.

IV. 맺음말

FAO와 WHO는 식량의 국제무역거래시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간 매우 다른 각종 식품규격을 통일하여 국제식품규격을 만들기 위해 1962년 FAO/WHO합동국제식품위원회를 설립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식량의 무역거래량이 증가하고 국가간 무역자유화가 크게 대두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의 시장개방 압력을 크게 받게 되었다. 각종 식량의 수출을 주도하는 선진국은 수입국의 간접적 수입규제조치라고 할 수 있는 식품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는 식량의 무역거래시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보호에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찌기 여러국가들은 자국의 이익 확보와 식량의 무역거래 확대를 위해 본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소홀히 하여왔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계속될 것은 기정사실 임으로 식량의 수출입에 있어 당사국간의 이해관계 협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식품표시와 같은 Codex식품위원회 및 각종 전문부회 등에 적극참여 하여 선진국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활용한다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오는 식량의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